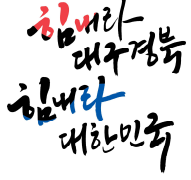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4. 10.(금) 총 4매(본문4)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김완국, 사무관 송태호, 주무관 배석은 • ☎ (044) 201-4023, 4025
보 도 일 시		2020년 4월 1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12.(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처우 개선 권고

10일 업계 간담회서 기사차량 조기 충원, 휴게시간 등 보호조치 준수 당부

-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10일(금)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하여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택배 운송차량 및 택배 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①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하여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여 물동량을 분배하여 배송
- 택배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하여 택배종사자의 배송업무 지원

②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 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
-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 검토

③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
-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 차례 물량을 나누어 배송하여 휴식시간 확보

④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 영업소의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하여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하여 배송

⑤ 건강관리자 지정

-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에서 배제

-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배송완료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이상 유무 등 확인
-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하여 팀원 중에 연락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기관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대응체계 구축



⑥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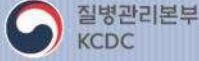
-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하여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
- 택배 종사자의 사업장 내 작업 중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택배차량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

⑦ 비대면 배송 유도

- 택배기사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 실시
- 국토교통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송태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송태호 사무관(☎ 044-201-40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기침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해외감염병 NOW 에서!

발행일 : 202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주요증상

- 발열
- 폐렴
-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위험요인

중국 방문 후
증상 발현

중국 방문객은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동물
접촉 금지

발열, 호흡기증상자와의
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방문 후, 증상* 발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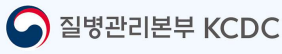
*주요증상: 폐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게시일 : 2020.1.29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